



울산광역시태권도협회

수신 각 도장관장

참조 사범

제목 제104차 국기원 승품/단 심사 개최 알림

1. 귀 도장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2. 우리 협회에서는 국기원에서 주최하는 **제104차 국기원 승품/단 심사**를 다음과 같이 실시 하오니 귀 도장의 유자격자를 추천하여 기한 내 응시 바랍니다.

- 다 음 -

심사일자	심사장소	국기원 접수일자	심사비 입금마감일
2023년 6월 24일(토)	동천체육관	5.26(금)~6.2(금)	6.2(금)

1) 구별심사 일정순서 : 남구 → 울주군 → 북구 → 중구 → 동구 → 4~5단

(세부 일정표는 접수 마감 후 변경 될 수 있으니 홈페이지 참고바랍니다.)

2) 4, 5단 필답심사

가. 4, 5단 필답심사 예상문제집 참고.

나. 2023년 제103차 특별심사 1과목 불합격자는 다음 회수(104차) 한하여 재응시 할 수 있음.

다. **6월 24일(토) 오후 2시** 필답심사 및 소양교육 실시.(장소: 심사장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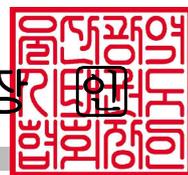
3) 장애인 응심자는 관련서류(복지카드만 허용)를 **6월 2일(금)**까지 사무국에 제출바람.

4) **심사 응심자는 사진대조 시 시간준수** 바라며, 대조시간 불응 시 **중간 입장이 불가함**.
마지막 심사 후 사진대조 가능.

5) 국기원 심사 운영규정 및 규칙을 참고바랍니다.

※ 첨부: 국기원 심사운영 규정,규칙. 외

울산광역시 태권도협회장



담당 김기연 차장 박승원 사무국장 김태형 전무이사 손효봉 회장 김화영

시행 울태협 제2023-068호 (2023.05.25) 접수 ()

우. 44497 울산광역시 중구 영포로 85(남외동) / <http://www.ulsantkd.org>

전화 052)281-2455/2100 / 전송052)292-0166 / E-mail :ulsantk@hanmail.net / 공개

품/단별 심사 과목표

< 표: ○:실시 X:미실시 >

구 분 응심 품단	실 기 심 사					이론심사
	품 세		겨루기	기본동작	격파	필답고사
	필 수	지 정				
1품	X	태극 1-8장 중 2개 지정	○	○	X	X
1단	태극8장	태극 1-7장 중 1개 지정	○	○	X	X
2품/2단	고려	태극 1-8장 중 1개 지정	○	○	X	X
3품/3단	금강	태극 1-8장, 고려 중 1개 지정	○	○	X	X
4품	태백	태극 1-8장, 고려, 금강 중 1개 지정	○	○	X	X
4단	태백	태극 1-8장, 고려, 금강 중 1개 지정	○	○	○	○
5단	평원	태극 1-8장, 고려, 금강, 태백 중 1개 지정	○	○	○	○

(※ 실기심사과목 중 지정품세부분 운영은 추첨으로 지정한다)

< 실기심사 기준 및 평가방법 >

※ 실기심사과목(품세, 겨루기, 기본동작) 중 1개과목 불합격시는 과락으로 불합격판정하며, 4, 5단은 격파와 이론심사 필답고사과목 추가.

1. 기본동작 평가는 ①정확성, ②숙련도, ③균형(100점)을 평가한다. (60점이하 불합격처리)
2. 품세 평가는 ①완성도(50점), ②숙련도(40점), ③품위(10점) 등을 평가하되, 지정 및 필수를 합하여 평균치를 산출한다.
3. 겨루기 평가는 ①공격력(30점), ②방어력(30점), ③기술의 다양성(40점)등을 평가한다.
4. 격파 평가는 ①시선, ②기합, ③동작의 완성도 등을 평가한다.

(손날- 벽돌. 격파물은 플라스틱 제품 사용.)

5. 심사의 공정성을 위해 지정 품세는 심사현장에서 각 품.단별 추첨으로 선정함.
6. 4.5단 응심자는 6월 24일(토) 오후2시(장소: 심사장) 필답심사 및 소양교육 실시.
7. 심사과목평가에 기본동작도 포함되오니 각 도장 지도자께서는 응심자 훈련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. (몸통지르기, 기본동작, 품/단별 연결발차기)

응시자의 도복 부착물 허용범위

도복 상의(앞면)	도복 상의(뒷면)
	
<p>○ 도복 상의(앞면) 왼쪽 가슴에 소속명(로고) 부착 허용, V자 아랫부분 부착 허용. 단, 왼쪽 가슴에 국기를 부착할 경우 오른쪽 가슴에 소속명(로고) 부착 허용 (왼쪽 가슴 및 오른쪽 가슴 점선 크기 정도)</p>	<p>○ 도복 상의(뒷면) 소속명, 성명, 태권도 글자 등 부착 허용 (등 부위 점선 크기 정도)</p>
도복 상의(옆면)	도복 하의(옆면)
	
<p>○ 도복 상의(옆면) 왼쪽 팔부분에 소속명 부착 허용 (어깨선 이하 점선 크기 정도)</p>	<p>○ 도복 하의(옆면) 다리부분에만 소속명 부착 허용 (무릎 이하 점선 크기 정도)</p>